

의정부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19가단227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오영탁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동

변론 종결2021. 12. 15.

판결 선고2022. 3. 16.

주 문

1. 피고와 망 C 사이에 포천시 D 임야 2,536m²에 관하여 2018. 12. 10. 체결된 매매계약은 127,956,49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7,956,4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쇄용 잉크를 생산하는 법인, C은 E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인쇄용 잉크를 매수하고 이를 현수막 공장 등에 납품하였던 자이다.

나. C은 2018. 12. 10. 피고에게 포천시 D 임야 2,5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5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8. 12. 10. 접수 제441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조합으로 한 2008. 4. 25.자 채권최고액 5,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인 2018. 12. 1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인쇄용 잉크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9. 3.경 C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018. 5. 14. 기준으로 119,827,625원의 물품대금채권이 남아 있는데, 2019. 3. 29.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C은 원고에게 109,827,625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9가단4076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1. 21. E를 폐업하였고, 2019. 10. 20. 사망하였다.

다.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살펴본 사실 및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 즉 원고의 망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2018. 5. 14. 기준 119,827,625원인 점, 망인이 2019. 4. 29.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4076호 사건에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인정하고 변제방법에 대하여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망인의 채무초과 여부

1) 망인의 적극재산 ○ 앞서 든 증거들,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할 당시 망인은 아래 표 '재산내역' 항목란 기재와 같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12. 10. 기준 적극재산의 가액은 아래 표 '시가' 항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	167,376,000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전북 임실군 H 임야 889m ²	8,356,600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차량번호 1 생략)	731,000	
(차량번호 2 생략)	5,402,000	
(차량번호 3 생략)	3,823,000	
합계	185,688,600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망인의 다른 공급업체에 대한 합계 122,195,000원의 미수금 채권이 망인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의 다른 공급업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2015. 2. 5.부터 2019. 1. 3.까지인데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이 현재까지 위 금원 중 일부라도 추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2019. 1.경 판매부진과 수금악화를 이유로 잉크 납품 사업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미수금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감정인 G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 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감정인 G의 감정방법 등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감정결과를 탓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망인의 소극재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가까운 2019. 1. 18. 아래 표 '채무 내역' 항목란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 및 그 무렵 채무의 가액이 아래 표 '가액' 항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	20,789,000
J	27,119,000
K	2,789,000
L	14,000,000
M	18,761,000
N	11,376,000
O	15,584,000
P	22,284,000
Q	10,257,000
원고	119,136,000
합계	262,095,000

3) 소결론 이와 같이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무렵 망인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무렵인 2018. 12. 10.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공동담보 부족으로 일반 채권자의 채권변제가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먼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을 제4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축탁 결과를 종합하면, 감정일인 2020. 11. 13.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69,912,000원 상당인바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69,912,000원일 것으로 추인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41,955,50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공동담보가액은 127,956,491원(= 169,912,000원 - 41,955,509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공동담보가액 127,956,491원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¹⁾, 손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는 위 127,956,491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27,956,491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7,956,4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태지영

1) 2020. 12. 16.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만으로도 133,809,657원[= 원금 109,827,625원 + 지연손해금 23,982,032원 (109,827,625원×(1+300/366) × 12/100)]이 되어 공동담보가액인 127,956,491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위 127,956,491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